

발행인: 서울특별시청 정 상 천

편 집: 문화공보관 심 계 섭

전화 75-7834

인 쇄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제 758 호
1980. 3.10

시 보

차 례

◎ 훈 령

제 521 호: 서울특별시국민(민영)주택사업계획심의회운영규정중개정
규정..... 3

제 522 호: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개정규정..... 3

◎ 고 시

제 87 호: 도시계획시설(도로)저적승인..... 5

◎ 공 고

제 62 호: KS표시정지처분공고..... 5

제 64 호: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..... 6

제 17 호(마포구공고): 공인개작공고..... 6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훈 령

서울특별시 국민(민영)주택사업계획 심의회 운영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80년 3월 10일

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

◎ 서울특별시훈령 제 521 호

서울특별시국민(민영)주택사업 계획심의회운영규정중 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민영주택사업계획 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심의회는 위원장 1 인과 위원 10 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제 2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주택국장, 산업국장, 도시계획국장, 건축국장, 수도국장, 녹지국장, 하수국장, 비상계획관이 되고 필요시 위원장이 국장급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.

제 3 조중 제 1 호 내지 제 9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민영주택사업 승인과 관련된 법령의 종합검토
2. 건축적지여부판단

3. 도시계획상 지장유무
4. 토지 형질변경 가능여부
5. 급수 가능여부 판단
6. 군사보호구역 지촉여부
7. 층고 조정 및 주위건물과의 조화
8. 진입도로 연결 관계등
9. 기타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측면에서 검토

제 6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 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행정계장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위임전결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80년 3월 10일

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

◎ 서울특별시훈령 제 522 호

서울특별시 위임전결규정 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위임전결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시장 및

시장 산하 각 기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기관의 보조기관이 전결토록 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에 의한 결재 한계를 명백히 하고,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,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전결방법) ①전결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별표 1 내지 별표 19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. 다만, 전결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②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 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.

④시장 또는 각 기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위임에 불구하고 바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 4 조 (중요사항) 시장 산하 각 기관장의 소관사항중 다음 사항은 본청의 위임 전결부분에 준하여 시장 혹은 부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.

1. 소관업무의 기본운영계획
2. 신규 이해적인 사업계획 및 시행
3. 다수 시민의 이해에 관련된 기본방침
4. 외부기관과의 시장을 대리한 업무의 협조, 동의, 계약의 체결등
5. 차관 및 기채계획
6. 청사등의 신축이전
7. 국외출장
8. 기타 중요사항

제 5 조 (합의) 전결사항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,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

제 6 조 (결재위반여부확인) 문서통제관은 본 규정의 전결 구분에 의한 결재의 여부와 합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전결권자의 책임)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시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 - ② (폐지규정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 - 1. 서울특별시소방본부 위임전결규정
 - 2. 서울특별시 소방서 위임전결규정
- ※ 별표 1-19 별책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87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

- 1. 건설부 고시 제 393 호 (78. 12. 7) 로 결정고시된 당시 관내 도시 계획시설 (도로)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 12. 10) 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0.3.10

서울특별시장

○ 도로 지적승인 조서

구 분	등급	유형	번호	폭원	연장	시 점	종 점	비고
지적승인	대	2	54	30 m	220 m	구로동 424-128	구로구청	
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2 호

KS 표시정지처분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의거 아래와 같이 KS (한국공업규격)

표시 정지처분 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

1980.3.8

서울특별시장

허가번호 : 제 1,201 호

허가일자 : 1975.11.26

제조업체명 : 한일전선 주식회사

대표자: 이 용 학
 소재지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610-8
 규격번호: KSC3302
 품 명: 600 V 비닐전선
 총용등급: 2.0 mm
 처분기간: 처분일로부터 3개월 (당시 해재공고시까지)
 처분일자: 80.3.8
 처분사유: KS 규격미달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64 호

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

1. 영등 1지구 (추가)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에정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있어 환지계획을 변경코져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 제 55 조와 동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2. 환지계획 관계조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.

1980.3.10

서울특별시장

(변경내역)

가. 사업명: 영등 1지구 (추가) 토지

구획정리사업

- 나. 변경위치: 관악구 방배동 420의 2호 일대
 다. 변경면적: 1,748.80 평

◎ 마포구 공고제 17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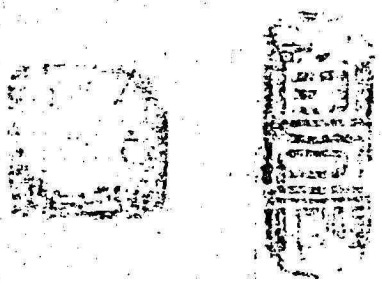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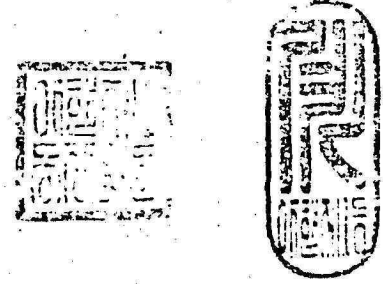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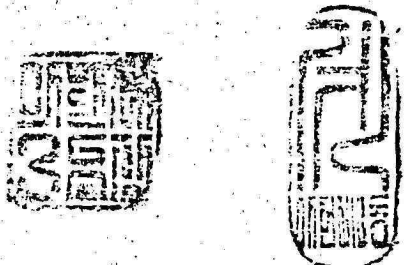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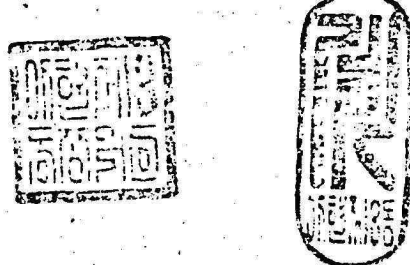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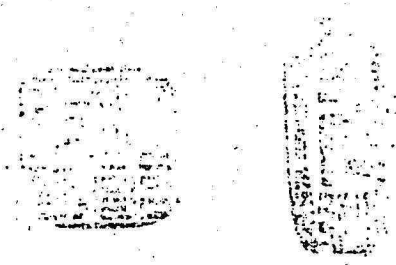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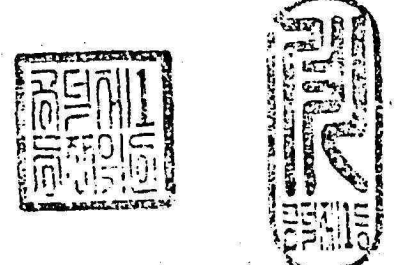
공인 개인 공고


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동장 직인 및 제인을 개인하였기 동 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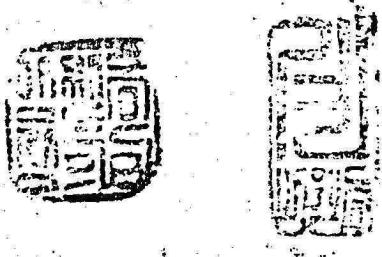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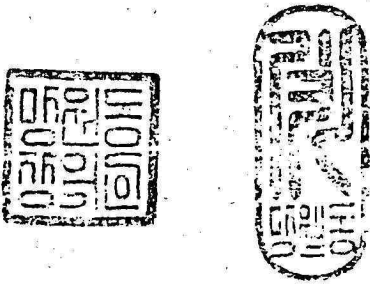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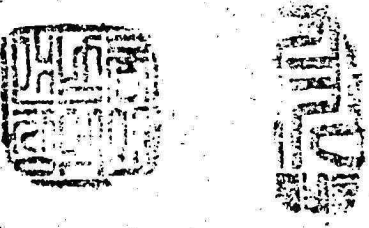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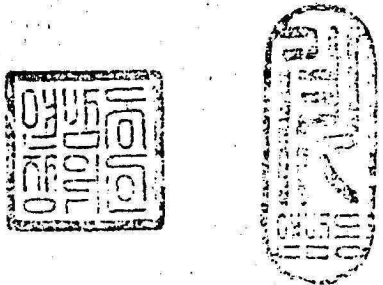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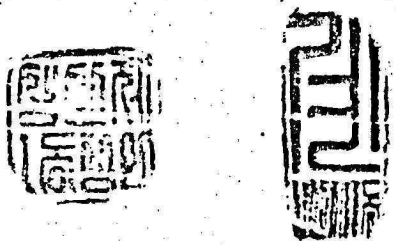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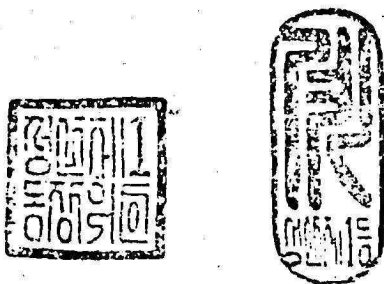
1980년 3월 일

마포구청장

1. 개인대상동: 아현 1 동, 아현 3 동, 공덕 1 동, 용강동, 염리동, 합정동, 망월동, 연남동, 성산 1 동
2. 사용일시: 80.3.17.09:00
3. 개인공인인영: 다음

	폐 작 인	개 작 인
인 양		
양 인 명	아 현 1 동 장 인 및 계 인	아 현 1 동 장 인 및 계 인
인 양		
양 인 명	아 현 3 동 장 인 및 계 인	아 현 3 동 장 인 및 계 인
인 양		
양 인 명	공 덕 1 동 장 인 및 계 인	공 덕 1 동 장 인 및 계 인

	폐 각 인	개 각 인
인 인	 	 
공 인	공 장 인 및 계 인	공 장 인 및 계 인
인 인	 	 
공 인	공 장 인 및 계 인	공 장 인 및 계 인
인 인	 	 
공 인	공 장 인 및 계 인	공 장 인 및 계 인

	폐 각 인	개 각 인
인 영		
공인 영	망원동장인및계인	망원동장인및계인
인 영		
공인 영	연남동장인및계인	연남동장인및계인
인 영		
공인 영	성산1동장인및계인	성산1동장인및계인